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R143)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주)(전화) ☎ 1577-1640

4.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2015년 11월 19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11월 23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1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III.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 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 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기본운용전략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7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 × 70% + KOSPI × 30%

< KIS국고채1~2년 :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전략에 따라서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등

| 모투자신탁명칭 | 주요투자전략 |
|------------------------|--|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 <p>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에 40%이하로 투자합니다.</p> <p>② 주식투자부분에 대하여 주로 활용할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 등을 구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ng-Short 전략 : 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 ▷ Pair Trading 전략 : 동일 산업 내 기업 경쟁력 차이나 세부 업황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다른 산업 간 거시환경 및 각종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거나 장기 |

| 모투자신탁명칭 | 주요투자전략 |
|---------|---|
| | <p>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통 포트폴리오를 구축</p> <p>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④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p> <p>※ 비교지수: KIS국고채1~2년 × 70% + KOSPI × 30%</p> |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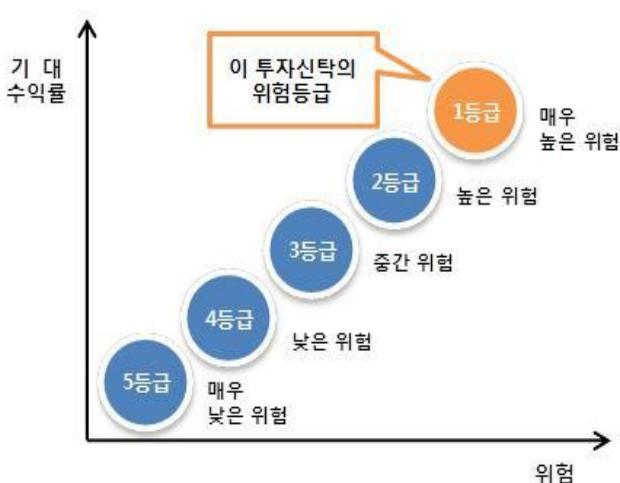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 주요 내용 |
|---------|--|
| 원본손실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요 운용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 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 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제한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는 위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년도 | 직위 | 운용현황(15.10.31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운용중인집합투자기구수 | 운용자산규모 | | |
| 송진용 | 1975 | 본부장 | 44개 | 28397억 원 |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 -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연도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투자신탁 | 9.47 | - | - | - | - |
| 종류A | 8.23 | - | - | - | - |
| 종류A-e | 8.53 | - | - | - | - |
| 종류C1 | 7.42 | - | - | - | - |
| 종류C2 | - | - | - | - | - |
| 종류C-e | 8.28 | - | - | - | - |
| 종류C-I | 8.79 | - | - | - | - |
| 종류F | 2.76 | - | - | - | - |
| 비교지수 | 1.39 | - | - | - | - |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는 KIS국고채1~2년 × 70% + KOSPI × 30%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매수수 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 수료 |
| 종류A | 제한없음 | 1.000% 이내 | — | — | — |
| 종류A-e | 온라인 가입자 | 0.500% 이내 | — | — | — |
| 종류C1 | 제한없음 | — | — | — | — |
| 종류C2 | C1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수익자 | — | — | — | — |
| 종류C3 | C1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수익자 | — | — | — | — |
| 종류C4 | C1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수익자 | — | — | — | — |
| 종류C-e | 온라인 가입자 | — | — | — | — |
| 종류C-a | 50억 원 이상 가입자 | — | — | — | — |
| 종류C-I | 전문투자자 등 | — | — | — | — |
| 종류F |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 — | — | —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 |

* 각 종류별 상세한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I: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 ·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용(연간, %) | | | | | | |
|-------|------------------|------------|------------|-----------------|-------------|--------------|------------------------------|
| | 집합 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 기타비용 주1) | 총보수비용 주2) | 총보수비용(피 투자집합투자 기구보수포함) |
| 종류A | 0.55 | 0.550 | 0.03 | 0.02 | 0.01 | 1.16 | 1.16 |
| 종류A-e | 0.55 | 0.270 | 0.03 | 0.02 | 0.01 | 0.88 | 0.88 |

| | | | | | | | |
|-------|------|-------|------|------|-------|------|------|
| 종류C1 | 0.55 | 1.300 | 0.03 | 0.02 | 0.01 | 1.91 | 1.91 |
| 종류C2 | 0.55 | 1.090 | 0.03 | 0.02 | - | 1.69 | 1.69 |
| 종류C3 | 0.55 | 0.900 | 0.03 | 0.02 | - | 1.50 | 1.50 |
| 종류C4 | 0.55 | 0.710 | 0.03 | 0.02 | - | 1.31 | 1.31 |
| 종류C-e | 0.55 | 0.500 | 0.03 | 0.02 | 0.01 | 1.11 | 1.11 |
| 종류C-a | 0.55 | 0.550 | 0.03 | 0.02 | - | 1.15 | 1.15 |
| 종류C-I | 0.55 | 0.030 | 0.03 | 0.02 | 0.01 | 0.64 | 0.64 |
| 종류F | 0.55 | - | 0.03 | 0.02 | 0.01 | 0.61 | 0.61 |
| 지급시기 | | | | | 사유발생시 | -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 거래비용 | - |
| 금융비용 | - |
| 발행분담금 | - |

주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 수익증권 종류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A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218 | 474 | 752 | 1,54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218 | 474 | 752 | 1,549 |

| 수익증권 종류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40 | 333 | 544 | 1,14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40 | 333 | 544 | 1,149 |
| 종류 C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95 | 505 | 910 | 2,07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95 | 505 | 910 | 2,072 |
| 종류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13 | 357 | 624 | 1,387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13 | 357 | 624 | 1,387 |
| 종류F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62 | 196 | 343 | 76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62 | 196 | 343 | 762 |
| 종류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81 | 206 | 359 | 79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81 | 206 | 359 | 799 |
| 종류C-a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33 | 370 | 646 | 1,437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33 | 370 | 646 | 1,437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 | |
|-------|--|
| 산정 방법 |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 · 계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 · 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 구분 | 15시 이전 | | | 15시 경과후 | | |
|----|---|-------------|-------------|---|-------------|-------------|
| 매입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
|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 제1영업일 | 제3영업일 | |
|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 |
|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제4영업일 | 제1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 | 환매신청 (3시 이전)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환매신청 (3시 경과후)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 |
|----------|---------------|---|---|---|
| 항목 | 1기 (15.04.15) | — | — | — |
| 운용자산 | 31,519 | — | — | — |
| 증권 | 31,462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
| 부동산/설물자산 | —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56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
| 기타자산 | 2,910 | — | — | — |
| 자산총계 | 34,430 | — | — | — |
| 운용부채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2,568 | - | - |
| 부채총계 | 2,568 | - | - |
| 원본 | 31,861 | - | - |
| 수익조정금 | -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자본총계 | 31,861 | - | - |

요약 손익계산서

| 항목 | 1기(14.04.16 ~ 15.04.15) | - | - |
|------------|-------------------------|---|---|
| 운용수익 | - | - | - |
| 이자수익 | - | - | - |
| 배당수익 | - | - | - |
| 매매/평가차익(손) | - | - | - |
| 기타수익 | - | - | - |
| 운용비용 | - | - | - |
| 관련회사보수 | - | - | - |
| 매매수수료 | - | - | - |
| 기타비용 | - | - | - |
| 당기순이익 | 1,842 | - | - |
| 매매회전율 | - | - | -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 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